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67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서범수・김위상・장동혁

이헌승 · 김소희 · 김기현

송석준 • 이양수 • 고동진

강선영 · 최보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

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 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용소 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 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를 "제1

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 전단에"를 "제12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 전단에도"를 "제12조

제1항에도"로 한다.

바.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에"를 "제12조제3항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을"을 "제12조제4항을"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시행 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 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
설) ① • ② (생 략)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
	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지원대상자
	4.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u> <신 설></u>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
	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려는 사람에게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
	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 |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ㅣ 제2조ㅣ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 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 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신 설>

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이 경우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 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 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 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 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 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 야 한다.

(3)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 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 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제1항에</u> 따른 소방 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

- <u>제1항 및 제2항에</u>
<u>.</u>
<u>4</u>
- <u>제1항 및 제2항에</u>
<u>⑤</u> <u>제4항</u>
<u>⑥</u>
<u>제1항 및 제2항에</u>

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 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제5항에</u> 따른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⑦</u> (생 략) <신 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제 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u>⑦</u>
<u>제6항에</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
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
∥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례) ①
<u>제12조제1항에</u>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으로 정하는 것 가. ~ 마. (생 략) <신 설>

- 2.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
<u>바.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u> <u>스프링클러설비</u>
스프링클러설비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⑤ (생 략)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7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	
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	
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	
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u>제12조제2항에</u> 따른 소방시	
설에 대한 조치명령	
2. ~ 6. (생 략)	
② (생 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7
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 2. ~ 6. (생 략)
 ② (생 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u>제12조제1항을</u> 위반하여 소
 - 1. <u>제12조제1항을</u>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1. <u>제12조제3항에</u>	
2. ~ 6.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반행위의 신	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1. <u>제12조제1항 또는</u>	· 제2항을

자

- 2. <u>제12조제3항을</u> 위반하여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 9. (생략)
-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12조제1항을</u>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

2. <u>제12조제4항을</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u>제12조제4항</u>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1. <u>제12조제3항</u>
 1. <u>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